

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관리 ·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10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04.12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 중 소각 가능한 품목을 환경관리센터에 반입 처리하여 줌으로써 사업체의 위탁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가연성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는 방법 외에 별도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.

- 반입 수수료 : 1톤당 80,000원

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·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제1항중 “가연성폐기물”을 “가연성폐기물(이하 “가연성사업장 생활계 폐기물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⑦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연성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파주시생활 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배출방법외에 별도로 별표와 같이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소관 실·과·소		환경보호과 ☎ 940-4492
입 안 자	환경보호과장	전 상 오
	환경시설담당	박 완 재
	담 당 자	이 능 우

【별표】

가연성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반입 수수료

단 위	금 액	비 고
1톤당	80,000원	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생산자 책임 재활용분리수거 대상 품목은 제외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4조(소각 및 매립대상 폐기물등) ①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·운반·보관처리할 수 있는 <u>가연성 폐기물</u>로 한다.	제4조(소각 및 매립대상 폐기물등) ①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연성 폐기물</u> (이하 “가연성사업장생활폐기물”이라 한다)로 한다.
제7조(시설의 사용등)①~⑥생략 <u><신설></u>	제7조(시설의 사용등) ①~⑥(현행과 같다) ⑦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연성사업장생활폐기물은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에 의한 배출방법외에 별도로 별표와 같이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 ·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 2003년 4월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 가능한 품목을 환경관리센터에 반입 처리하여 줌으로써 사업체의 위탁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연성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는 방법외에 별도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.
 - 반입 수수료 : 1톤당 80,000원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환경관리센터에 반입 처리토록 함으로서 사업체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위탁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4조에서는 현행 “가연성 폐기물”을 “가연성사업장생활계 폐기물”로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장의 가연성 생활계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제7항 규정을 신설하여 가연성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정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동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관리센터내 소각시설 용량이 1일 200톤(100톤×2기)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일 평균 47톤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연간 약 1억원 정도 추가세입이 예상됨.
- 향후에도 사업체에서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생활화될 경우 반입량 증가에 따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그동안 관내 기업체관계자들이 가연성폐기물의 환경관리센터 반입처리를 요구해 왔던 상황에서 동 요구사항을 시에서 수용함으로서 시와 기업체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